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정관 변경 보고

2020. 11. 23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

1. 의결주문

서울연구원 정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안부)」에 따라 기본재산 및 기관 운영 재원의 관련 조항 정비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20.7.16.)」 제명 및 명칭 변경(‘노동자이사’ ⇨ ‘노동이사’)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 기본재산의 자원 유형 정리(안 제5조)
 - 기본재산 자원 : 기금 적립 금액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4호
- 기관의 운영 자원 유형 정리(안 제7조)
 - 운영 자원 : 기금의 과실수입(이자) ⇨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행안부)」 : 기금의 이자수입은 해당 기금의 수입이며, 기관의 운영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본재산의 사용 근거 조항 마련(안 제8조의2)
 - 기본재산을 사용(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 잉여금의 처분 대상 정리(안 제12조)
 - 잉여금의 처분(기금전입 → 기본재산 적립)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명칭 변경(안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5항)
 - 명칭변경 : (기존) 노동자 이사 ⇨ (변경) 노동이사
 -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8948(2020. 7. 22.)에 따라 개정

4. 시행일: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현금 500,000원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서울특별시,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 받은 토지 및 건물 3. <u>기금으로 적립한 금액</u> 4.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p>② (생략)</p>	<p>제5조(재산) ① 연구원의 재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 기본재산은 현금 500,000원으로 하며,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자가 설립당시에 출연한 출연금 2. 서울특별시, 국내외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개인으로부터 양도나 기부 받은 토지 및 건물 3. <u>세계잉여금 중 적립금</u> 4.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u>기금의 과실수입</u>,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운영재원) 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u>기본재산의 이자수입</u>, 용역수탁수입, 출판물 판매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 편입) ①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u> 2. <u>연구원의 수입이 감소한 경우</u> 3. <u>연구원의 운영재원이 부족한 경우</u> 4.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u> <p>② <u>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 편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p>
<p>제12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연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u>기금전입</u> 등으로 처분한다.</p>	<p>제12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연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에 따라 <u>기본재산 적립</u> 등으로 처분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3조(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u>노동자 이사</u> 포함) 감사 2인 원장 1인 <u>노동자 이사</u> 1인 ② ~ ③ (생략)</p> <p>제14조(이사의 선임) ① ~ ② (생략) ③ <u>노동자 이사</u>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생략)</p> <p>제15조(임원의 임기) ①~④ (생략) ⑤ <u>노동자 이사</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 투표 등 선출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노동자 이사</u>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u>노동자 이사</u>의 임기와 관계없이 <u>노동자 이사</u>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p>	<p>제13조(임원)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원장, <u>노동이사</u> 포함) 감사 2인 원장 1인 <u>노동이사</u> 1인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이사의 선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노동이사</u>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임원의 임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u>노동이사</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노동자 투표 등 선출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노동이사</u>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u>노동이사</u>의 임기와 관계없이 <u>노동이사</u>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p>

‘기본재산’ 관련 법령 정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①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2(기본재산의 보통재산으로의 편입) ①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2.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3. 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4.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